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. 8. 12 선고 2020가단135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

피고B종친회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8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1994. 10. 12. 접수 제102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홍승모

별지